기타안건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안 건 명	제 안 일 자	회 부 일 자	상 정 일 자	의 결 일 자	제안설명	비고
주덕소도읍 육성계획 동의안	2009. 11.6	2009. 11.9	2009. 11.13	2009. 11.13	지역개발 과장	

2. 제안설명요지

○ 소도읍육성계획은「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」제4조,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대상지를 공모제에 따라 선정하고 국비(행정안전부)를 지원(4개년 20억원) 받아 경제·사회·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 소도시 육성, 농어촌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

○ 주덕소도읍을 특성화·전문화하여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·농간의 거점 소도읍으로 집중 육성코자 계획한 주덕소도읍 육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계획의 개요

- 위　　치 : 충주시 주덕읍 일원
- 면　　적 : 48.46㎢
- 사 업 량 : 도심지정비사업 등 8개 분야사업
- 사 업 비 : 11,053백만원

※ 소도읍육성사업계획 공모선정시 4년간 국비 50억원 지원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지방 소도읍육성사업은
지역사회의 경제적 거점지역을 육성하고
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 및 생활편익과
문화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
사업으로

충주시 주덕읍은
2001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고시되었음

○ 본 안건은
「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
규정에 의거 수립된 지방소도읍육성계획(안)을 '소도읍육성 지원
사업 선정지침'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

○ 본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될 시
4년간 국비 50억과 도비 25억을 지원받아 지역발전의 전기를
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써,

주덕읍을 주변 농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
침체된 농촌경제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
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에
기여할 수 있도록
충주시의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로 사료됨

○ 다만, 주덕소도읍육성계획이
충주시의회의 동의를 거친다 하더라도
충청북도의 1차 심사를 통과하고 행정안전부의 최종심사를
거쳐야 하는 어려운 단계가 있으므로
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로 행정력을 집중하여
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임

5. 질의답변 요지

(1) 질의 : 추진이 다소 늦었음. 최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
답변 :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

(2) 질의 : 주차장 등의 위치변경 가능한가?
답변 : 실시계획 수립시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함.

6. 심사결과

○ 주덕소도읍 육성계획 동의안 : 원안가결